

##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

- 1.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  
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·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2.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**  
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(도장을 찍음)을 하셔야 합니다.
- 3.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해**  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고의 등  
※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4.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**  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상 질문사항(고지사항)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.
- 5.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**  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6. 청약의 철회**  
일반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(다만,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),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.
- 7. 품질보증제도**  
보험계약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8. 보험계약을 해지 할 때**  
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「계약자 부담 보험료」에 「담보별미경과비율」을 곱한 금액을 환급(미납보험료 차감 후 지급)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, 보장기간 종료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.
- 9. 계약해지 후 다른보험 계약시 유의사항**  
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,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10. 보험 분쟁 조정**  
가입하신 보험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농협 또는 당세☎1644-8900/인터넷 www.nhfire.co.kr▶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☎국문없이 1332/인터넷 www.iss.or.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11. 예금자보호 안내**  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'최고 5천만원'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## 안내사항

**전화번호** NH농협손해보험 : Tel 1644-8900 | Fax 02)3786-7660  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: Tel 044)201-1799 | Fax 868-0186

**홈페이지** <http://www.nhfire.co.kr> > 보험상품 > 농작물재해보험  
<http://www.mafra.go.kr>

※ 본 안내장은 상품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 
준법심의필 2016-268호 | 제작 농업보험지원부 (2015. 5)

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**헤아림**

정부지원율 **50%**

지자체지원율 **20%~30%**

# 콩 농작물 재해보험

**대상품목** 콩

**가입기간** 6월 1일 ~ 7월 17일

**가입지역** 전국

**보상재해**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



# 콩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안내



## 가입내용

구분	내용
가입품목	콩 (장류 및 두부용, 나물용, 밥밀용)
가입대상	보험가입금액이 농지당 100만원 이상, 증권당 300만원 이상,
납입방법	일시납 (신용카드 납부가능)
자기부담비율	20%, 30%, 40%형 중 선택 ※ 20%형은 과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 보장내용

■ 보상하는 재해 :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

구분	수확감소보장	경작불능보장
보상내용	피해율 <sup>주1)</sup> 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	식물체피해율 <sup>주2)</sup> 이 70%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
보험금	보험가입금액 x (피해율 - 자기부담비율)	보험가입금액 x 30% ~ 40% ※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다름
보험기간	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시점 (단,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)	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개시시점

주1) 피해율 = (평년수확량 - 수확량 - 미보상감수량) / 평년수확량

\*"미보상감수량"이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,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, 병충해로 인한 피해 및 제조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써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 에서 제외됩니다.

주2) 식물체피해율 = 고사식물체 / 가입식물체

## '15년 경작불능보험금 보상비율 개선

자기부담 비율	'14년 보험금 (보험가입금액 기준)	'15년 보험금 (보험가입금액 기준)
40%형	35%	30%
30%형		35%
20%형		40%

## 예시



### • 보험료

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, 요율 7% 가정.

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	X	보험요율 7%	=	보험료 70만원	▶ 계약자 부담 14만원 수준
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※ 보험요율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, 실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산출된 보험료의 20% 수준 ('14년도 전국 평균)입니다.

### • 수확감소보험금

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, 피해율 50%, 자기부담비율 20% 가정.

**보험금 = 1,000만원 x (50% - 20%) = 300만원**

정상수확 500만원	자기부담금 200만원	보험금 수령 300만원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※ 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비율 이하의 피해율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.

### • 경작불능보험금

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, 식물체피해율 70%, 자기부담비율 30%(보상비율은 35%) 가정.

보험가입금액 1,000만원	X	보상비율 35%	=	보험금 350만원, 계약소멸
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

## 피해발생시 조치사항

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농협으로 사고발생 원인 및 피해정도를 통지 ▶ 농협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· 손해 평가 실시

※ 가입은 농지 소재지의 가까운 지역(품목)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